

| | | |
|------------------|-------------|--|
| 의안 번호 | 1693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

1. 검토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2. 3.(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0. 12. 3.(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0. 12. 14.(월)

2. 제정 이유

아동학대 관련업무 수행, 감염병 관리업무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인력 증원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정원조정을 위한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정원의 총수를 “662명”에서 “668명”으로 6명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을 “645명”에서 “651명”으로 6명 증원(안 제2조)
- 나.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별표 2)
 - 6급: 20% 이내 → 20.5% 이내
 - 7급: 33% 이내 → 33.5% 이내
 - 9급: 6.1% 이상 → 5.1% 이상
-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 3)
 - 총 계: 662명 → 668명(증 6명)
 - 일반직: 659명 → 665명(증 6명)
 - 6급 이하: 608명 → 614명(증 6명)

라.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비 율 | 1.2% 이내 | 7.2% 이내 | 20.5% 이내 | 33.5% 이내 | 32.5% 이내 | 5.1% 이상 |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 공무원

| 구 분 | 6급 상당 이상 | 7급 상당 이하 |
|-----|----------|----------|
| 비 율 | 50% 이내 | 50% 이상 |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근거 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관 등 분야의 인력 증원 및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인력 수요 변화에 따라 증원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근 거 법 규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급의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